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08.18.		16	2020.3.9	
2	2011.11.29.		17	2021.1.18	
3	2012.05.09.		18	2021.4.26	
4	2012.10.31.		19	2022.5.2	
5	2012.12.21.		20	2023.5.8	
6	2013.12.23.		21		
7	2015.2.3.		22		
8	2015.3.9.		23		
9	2016.1.12		24		
10	2017.3.1		25		
11	2017.11.2		26		
12	2018.3.1		27		
13	2018.10.22		28		
14	2019.8.26		29		
15	2019.12.27		30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교원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의 모든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재계약 임용(이하‘재임용’이라 한다.), 승진, 승호봉 심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5.2.3.>
3. 교원의 업적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4. 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해당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년도의 업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
 - 가. 교원업적평가자료 전산 입력 및 실적물 제출
 - 나. 비 공학교육인증과목 성적평가 및 입력
 - 다. 공학교육인증과목 성적평가 및 입력, 포트폴리오 및 지속적 품질개선(CQI) 보고서 작성 및 입력 <개정 2015.2.3.>

제 2 장 교육업적평가

제3조 (교육업적의 평가) ① 교육업적의 평가는 강좌별 수강생 수, 강의평가, 영어강의 및 석박사 배출 인원수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단,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비정년트랙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10.22.>

- ②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 의거 교원이 학기당 책임시간은 수행하였으나 책임시간내 년 학부 강의 12시간(학기당 책임시간이 7시간 이하인 교원은 연 6시간)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행하지 못한 학부 강좌 시간 수만큼 대학원 강좌의 수강생수 점수, 강의평가 점수, 영어강의 점수는 부여되지 않는다.
- ③ 공동 개설된 강좌는 단일강좌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8.18.>
- ④ 계절학기는 학년당 1강좌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1개 강좌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의해 최고 점수가 산출된 강좌를 인정한다. <신설 2015.2.3.>

제 3 장 연구업적평가

제4조 (연구업적의 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학술지 논문, 저서, 연구활동,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단,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비정년트랙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8.10.22.>

- ② 학술지 논문 및 저서는 해당기간 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실적물만을 인정하고, 교원의 소속은 반드시 본 대학교로 명기되어야 한다.
- ③ 학술지 논문 및 저서의 해당기간 내의 인정일 기준은 오프라인 게재 또는 출판일(Publication Date)을 기준으로 하고, 게재 또는 출판일이 명기된 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나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으로 인정하나 최종 실적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게재 또는 출판된 실적도 해당기간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종실적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실적과 오프라인실적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만 게재 또는 출판되는 실적물은 온라인 게재 또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2015.2.3., 2019.8.26.>
- ④ 학술지 논문, 저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공동연구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인정비율로 인정된다. 다만, 대학원생 이하의 연구보조원은 공동저자 수에서 제외하며,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구보조원 인정은 제출일 기준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15.2.3.>
- ⑤ 저서는 주저자나 공동저자 구분 없이 공동저자로 인정하며, 장(Chapter) 저술일 경우 총 장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⑥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복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하며, ‘표절된 연구업적’이라 함은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연구업적을 말한다.
- ⑦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교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전공과 무관한 연구이거나 논문작성에 기여한 바가 현저히 미미하다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증빙자료) 연구업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학술지 논문 : 논문 원본(별쇄본) 또는 사본 <개정 2015.2.3.>
2. 저서 및 특허(실용신안 포함) : 저서 및 특허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 일자, 교원명 등 해당 실적물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 4 장 봉사업적평가

제6조 (봉사업적의 평가) 봉사업적의 평가는 교내봉사, 교외봉사, 기타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2.3.>

제7조 (증빙자료) 봉사업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시홍보 : 입학관리팀에서 발행한 확인서(자유양식)
2. 학교행사 참여 : 행사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발행한 확인서(자유양식)
3. 기타 : 일자, 교원명 등 해당 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 등의 심사자료 및 기타 대학교의 주요 정책사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5.2.3., 2017.3.1.>

제9조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의 기준 및 점수) ① 해당기간 내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준 및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임용, 승진의 평가 대상기간은 임용 예정일 기준 3개월 전까지로 하며, 평가 대상기간 이후 임용예정일까지 발생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차기 재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1.12., 2017.3.1.>

1. 최초 계약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계약기간 동안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기준점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2.3., 2016.1.12.>
2. 승진 기준은 각 해당 직위별 최소승진소요년수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2.3.>
 - 가.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기준점수 <개정 2015.2.3.>
 - 나. <삭제 2015.2.3.>
 - 다. 연구 영역 의무점수 (의무점수A와 의무점수B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2.3.>
 - 라. 의무점수A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저자 의무편수(이하 '주저자 의무편수'라 한다.) <신설 2015.2.3.>
 - 마. 교육영역 의무점수 (교육영역 <1.7 학사관리>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점수로 학년도당 80점) <신설 2018.3.1.>
3. 교원이 각 해당 직위별 최소승진소요년수에 승진하지 못했을 경우, 차기 승진 심사 시 최소승진소요년수 동안 충족해야 할 부족점수를 충족해야 하고, 승진하지 못한 해당기간만큼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연간 점수 및 교육 의무점수를 추가하여 달성해야 한다. 단, 연구의무점수 및 주저자 의무편수는 변하지 않는다. <개정 2015.2.3., 2016.1.12., 2018.3.1.>
4.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 대상 기간 중 연구년이 포함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 년의 교육영역 점수로 260점(교육의무점수 80점 포함), 봉사영역 점수로 40점을 부여한다. 단, 연구년 기간이 6개월인 교원에 대해서는 년 기준 점수의 1/2을 부여한다. <개정 2009.8.18., 2015.2.3., 2017.3.1., 2018.3.1.>
5. 조기승진 기준은 각 해당 직위별 최소조기승진소요년수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단, 최소승진소요년수가 6년인 조교수의 경우, 최초 계약임용 만료 후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조기승진 여

- 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5.2.3., 2016.1.12.>
- 가.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기준점수 <개정 2015.2.3.>
- 나. <삭제 2015.2.3.>
- 다. 연구 영역 의무점수 (의무점수A와 의무점수B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2.3.>
- 라. 의무점수A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저자 의무점수. 단, Impact Factor 상위 5%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주저자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시 1편, 정교수 승진 시 2편 이상 포함해야 하며, Impact Factor 인정 요건은 본 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다. <신설 2012.12.21.><개정 2015.2.3.>
- 마. 교육영역 의무점수 (교육영역 <1.7 학사관리>에서 취득하여야 하는 점수로 학년도당 80점) <신설 2018.3.1>
6. 승호봉 심사는 정교수 승진 후 첫 번째 승호봉 이후부터 실시하며, 승급심사는 정교수에 한하여 실시한다. 단, 평가기간중 주 당 책임시간이 3시간인 주요 보직 교원에 보임된 교원의 승급심사는 <별표 11>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3.1.>
7. 승호봉 및 승급 기준은 <별표 9>, <별표 9-1>, <별표 9-2>와 같다. 승호봉 및 승급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3.1.>
- 가.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기준점수
- 나. 교육 및 연구영역 점수를 합산한 최소점수
- 다. 승호봉 및 승급기간 동안 충족해야 할 교육 및 연구 의무점수 <개정 2017.3.1., 2018.3.1.>
8. 승호봉 및 승급하지 못한 교원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승호봉 및 승급기간 동안 충족해야 할 부족점수를 충족해야 하고, 승호봉 및 승급하지 못한 해당기간만큼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연간 점수와 연간 교육 및 연구 최소점수 및 교육의무점수를 추가하여 달성해야 한다. 단, 연구의무점수는 변하지 않으며, 재심사를 연속 2회 이상 탈락한 교원의 경우 승호봉 및 승급 평가기간은 승호봉 및 승급일을 기준으로 <별표 9>, <별표 9-1>, <별표 9-2> 승호봉 및 승급 평가 기준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5.2.3., 2017.3.1., 2018.3.1., 2023.5.8.>
9. 교원이 직위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승진하지 못하여 동일직위로 재임용하였을 경우, 승진이 될 때까지 승호봉 되지 않는다.
- ② <삭제 2015.2.3.>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7조에 관한 기준점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위 승진임용 기준점수는 2001년과 2002년에 적용한다. 단 2003년 1월부터 적

용할 기준 점수는 2001년도에 정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전면개정)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교원, 직위 승진 및 승호봉된 재직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9조제1항제5호의 조기승진기준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② (종전 시행세칙의 적용) 가. 상기 적용 대상교원 외 재직교원은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이하 '종전 시행세칙'이라 한다.)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교원의 원에 따라 개정된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이하 '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한 교원업적평가를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단, 개정 시행세칙에 의한 교원업적평가를 선택한 교원은 종전 시행세칙으로 회귀할 수 없다.
 - 나. 2008년 3월 1일 전 직위 승진한 부교수 이하 재직교원의 동일 직위 내 승호봉 심사는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③ (개정 시행세칙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방법) 종전 시행세칙에 의한 평가로 인정된 업적 중 '연구영역' 실적만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재환산 평가하며, '교육영역'은 강좌 당 21점을 부여하고, '봉사영역'은 년 40점을 부여한다. 재평가 교원은 반드시 연구영역 실적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별표 4> 평가번호 5.1, 5.2, 5.3, 5.8, 5.9, 5.10 봉사업적평가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별표2> 평가번호 2.1, 2.2, 2.3 연구업적 평가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단, 개정된 <별표8> 조기승진 기준 점수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6.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은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 계약임용, 재임용, 승진, 승호봉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7년 3월 1일부터 전체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종전시행세칙의 적용) 상기 적용대상 외 교원은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③ (종전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방법) 201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이 되는 재직교원은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와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를 각각 만족해야 한다. 단, 종전 시행세칙의 의무계재점수와 개정 시행세칙의 의무점수 및 주저자 의무점수는 각각의 시행세칙 적용 년 수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적용한다.

- ④ (종전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실적 인정 방법)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 중 종전 시행세칙의 임용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 실적은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구영역과 봉사영역의 실적은 편수, 건수, 횟수 등 평가항목 단위로만 인정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 재임용, 승진, 승호봉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016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임용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며,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1>의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정기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부터 적용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연구업적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별표 3> 저자 또는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비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교육업적 평가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교원업적평가부터 적용하고, <별표 2> 연구업적 평가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금된 간접비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별표2> , <별표 2>, <별표6>, <별표 7>, <별표8>, <별표9>, <별표9-1>, <별표9-2>, <별표10>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7> 중 의무편수 관련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9.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7>, <별표 8>, <별표 9, 9-1, 9-2>, <별표 10>은 2023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 계약임용, 재임용, 승진, 승급, 승호봉 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5년 3월 1일부터 전체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종전시행세칙의 적용) 상기 적용대상 외 교원은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③ (종전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방법) 2025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이 되는 재직교원은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와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해당기간의 영역별 점수를 각각 만족해야 한다. 단, 종전 시행세칙의 의무계재점수와 개정 시행세칙의 의무점수 및 주저자 의무편수는 각각의 시행세칙 적용년 수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적용한다.
 ④ (종전시행세칙과 개정 시행세칙을 동시에 적용받는 재직교원의 평가 실적 인정 방법) 종전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 중 종전 시행세칙의 임용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세칙을 적용받는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 실적은 중복 인정 되지 않는다.

<별표 1> 교육업적 평가 기준

<개정 2013.12.23., 2017.3.1., 2018.3.1.,2019.12.27.,2021.1.18.>

평가번호	항 목	배 점		
1.1	수강생수 ¹⁾	[학부] 1. 일반강좌 ① 20명 이하 : $y = 15$ ② 21명~80명 이하 : $y = 15 + (x-20) \times 0.3$ ③ 80명 초과 : $y = 33 + (x-80) \times 0.5$ 2. 필수과목 중 분반처리된 강좌 (종합설계 과목 제외) $y = 23 + (x-40) \times 0.2$ [대학원] 1. 10명 이하 : $y = 15$ 2. 10명 초과 : $y = 15 + (x-10) \times 0.5$		
1.2	강의평가 ²⁾	1. 기준점수 = $10 - [20 \times (1.1-m)]$ (3 ≤ 기준점수 ≤ 10) 2. 점수 = 기준점수 × 강좌 학점 ※ m = 수강생 평가점수 ÷ 섹터별 강의평가 평균점수		
1.3	영어강의 ³⁾	(수강생수 점수) × 1.5		
1.4	석/박사 배출 인원수	■ 석사 : 5점/인 ■ 박사 : 10점/인 ※ 총 인정상한은 30점		
1.5	공학교육인증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⁴⁾	5점/회(상한 10점)		
1.6	교육기법 및 교수법개발 ⁵⁾	CTL(교수학습센터) 참여실적 - 교수법특강 참여 등 : 건당 5점 - Flipped Learning 실시 : 건당 10점 - E-learning 실시 : 건당 5점 - 강의모니터링 실시 : 건당 10점 - 교수연구회 참여 • 대표자 : 10점, 공동연구자 : 5점 - 수업설계컨설팅 참여 : 건당 10점 - 신입교원멘토링 멘토 참여 : 5점 - E-learning 콘텐츠 제작 • 외부공개용 : 20점, 내부공개용 : 10점 - 취·창업(진로) 역량강화 특강 참여 등 : 건당 5점 ※ 중복 인정하지 않음. 상한 50점		
1.7	학사관리	성적경고자 상담 ⁶⁾	3점	학년도당 16점
		장기결석자 상담 ⁷⁾	3점	
		성적이의신청자 상담 ⁸⁾	3점	
		진로경력관리 상담 ⁹⁾	3점	
		일반상담(지도교수) ¹⁰⁾	2점	
		상담시간 입력 ¹¹⁾	2점	학년도당 84점 (학기당 42점)
		수강지도 상담 ¹²⁾	7점	
		강의계획서 입력 ¹³⁾	7점	
		강의개선보고서 입력 ¹⁴⁾	7점	
		수업기간준수 ¹⁵⁾	7점	
		성적입력기간 준수 ¹⁶⁾	7점	
		강의편성 기준 준수 ¹⁷⁾	7점	

※ 각 주 해설

- 1) 수강생 수에 따른 평가점수는 <별표1> 평가번호 1. 1의 x값 범위에 따른 ① ~ ③의 공식을 적용하여 강좌별로 y값을 배점한다.
- 2) 강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는 학부와 대학원 강자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부 강좌 : 강자를 규모별(소형<수강생수 : 1~30명> / 중형<수강생수 : 31~60명> / 대형<수강생수 : 61명~>), 학년별(1, 2/3, 4학년) 및 유형별(전공/교양강좌) 총 12 섹터로 구분하여 섹터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강좌별 수강생 평가점수를 섹터별 강의평가 평균점으로 나눈 값(m)에 따라 <별표 1> 평가번호 1. 2의 표와 같이 A+(10점) ~ C+(6점)로 배점한다. 만일, 학부강좌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일 경우, 1, 2학년 강좌로 간주하여 섹터를 구분한다. 단, 사이버 강좌의 수강생 수 규모는 소형 1~150명, 중형 151~400명, 대형 401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대학원 강좌 : 강자를 총 2섹터(일반 및 특수대학원)로 구분하여 섹터별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강좌별 수강생 평가점수를 섹터별 강의평가 평균점으로 나눈 값(m)에 따라 <별표 1> 평가번호 1. 2의 표와 같이 A+(10점) ~ C+(6점)로 배점한다.
- 3) 해당 강좌가 영어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해 강좌 당 점수의 1.5배의 가중치를 두어 배점하나, 해당강좌의 강의평가 점수가 B이상일 경우만 적용한다. 단, 영어학과 소속 교원의 영어강좌는 인정하지 않는다.
- 4) 강의계획서(설계과목인 경우, 설계계획서 포함), 포트폴리오, CQI 보고서 모두를 제출 시 인정한다.
- 5) 교육기법 및 교수법 개발은 교무처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Flipped Learning 및 E-learning은 학부 및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학습을 부여하는 과목에 한하며, 교무처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음(학년당당 4건 상한) <개정 2021.1.18.>
- 6)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전 면대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에 응한 교원에게 배점함
- 7) 장기결석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경우 배점 부여되며, 학부(과)에서 결정하여 교무처로 통보한 담당교원에게 배점함

*장기결석관리대상 학생 : 주 1회 수업 기준 2번 이상, 주 2회 수업 기준 5번 이상 수업 불참자
- 8) 취득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으로 과목 담당교수가 진행함
- 9) 진로경력관리 상담 : 매 학기 학생이 작성하는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입력내용에 대한 지도내용
- 10) 일반상담 : 지도교수의 학생 일반 상담 실적이 있는 경우에 배점
- 11) 상담시간 입력 : 학생 상담을 위한 office hour 입력 실적이 있는 경우에 배점
- 12) 수강지도 상담 : 수강신청 이전 지도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상담을 기간내 100%완료했을 경우 배점
- 13) 강의계획서 입력 : 담당교원의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기간내 입력하였을 때 배점함
- 14) 강의개선보고서 입력 : 담당 강좌의 기말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개선계획을 입력하였을 경우 배점
- 15) 수업기간 준수: 학생의 출결관리를 위하여 학기당 수업시간을 모두 준수하였을때 배점함. 휴강발생에 따른 보강까지 완료하여야 함
- 16) 성적입력 기간 준수 : 성적부여기준을 준수하여 기간내 성적입력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배점
- 17) 강의편성기준 준수 : 교무처에서 지정한 강의편성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강의를 편성하였을 때 배점
[강의편성기준]

1	주 3일 이상 (월/수 또는 화/목) 편성
2	1일 5시간 이하 편성
3	이론수업 3시간 연속강의 금지
4 *	종합설계를 제외한 학부 이론 수업 1과목 이상 담당
	* 4번항목은 연구과제수행으로 인한 책임시간 감면을 허가받은 교원에 한함

<별표 2> 연구업적 평가 기준 <개정 2012.5.9., 2012.12.21., 2013.12.23., 2015.2.3., 2015.3.9., 2017.3.1., 2020.3.9., 2021.4.26., 2022.5.2., 2023. 5. 8.>

구분	평가 번호	항목	적용 구분 ¹⁾	배 점						연간 인정 상한
				IF ≤1%	1% < IF ≤5%	5% < IF ≤10%	10% < IF ≤20%	20% < IF ≤50%	50% < IF	
2. 학술지 논문	2.1	SSCI/A&HCI ²⁾	공통	300	270	240	210	180	150	-
	2.2	SCIE ³⁾	공통	200	180	160	140	120	100	-
	2.3	SCOPUS(국제/국내) ⁵⁾	공통	60점/50점						-
	2.4	국내등재지 ⁶⁾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40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50점						-
	2.5	국내등재 후보지 ⁷⁾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30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50점						-
2.6	학술대회 논문지 및 미등재학술지 ⁸⁾	공통	5점						10점	
2.7	대학차원의 보고서 제출 ²⁴⁾	공통	10점~300점							
3. 저서	3.1	전문학술서 ⁹⁾ (국제/국내)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경영대학(항공물)	120점/80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70점/120점						-
	3.2	번역서 ¹⁰⁾	공통	30점						-
	3.3	편저서(국제/국내) ¹¹⁾	공통	20점/10점						-
	3.4	일반도서 ¹²⁾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10점						-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50점						-	
3.5	창작물(국제/국내) ¹³⁾	공통	60점/40점						-	
4. 연구 활동	4.1	국내·국제 연구비 수탁[책임] ¹⁴⁾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2/(n+1) * 간접비] ÷ 100만원 × 8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2/(n+1) * 간접비] ÷ 100만원 × 12점						-
	4.1	국내·국제 연구비 수탁[공동] ¹⁴⁾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1/(n+1) * 간접비] ÷ 100만원 × 8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1/(n+1) * 간접비] ÷ 100만원 × 12점						-
4.2	학생(대학원/학부) 인건비 ¹⁵⁾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학생인건비 ÷ 100만원 × 2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학생인건비 ÷ 100만원 × 5점						-	

구분	평가 번호	항목	적용 구분	배 점	연간 인정 상한	
5. 산학 협력	5.1	국제특허/국내특허/실용신안/소프트웨어 ¹⁶⁾	공통	100점/40점/20점/20점	-	
	5.2	순수기술이전료[책임] ¹⁷⁾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교양학과(자연계열)	$[2/(n+1) * \text{순수기술이전료}] \div 100\text{만원} \times 8\text{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2/(n+1) * \text{순수기술이전료}] \div 100\text{만원} \times 12\text{점}$	-	
		순수기술이전료[공동] ¹⁷⁾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 경영대학(항공물), 교양학과(자연계열)	$[1/(n+1) * \text{순수기술이전료}] \div 100\text{만원} \times 8\text{점}$	-	
			항공·경영대학(운항, 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자유전공학부	$[1/(n+1) * \text{순수기술이전료}] \div 100\text{만원} \times 12\text{점}$	-	
	5.3	현장실습지도 ¹⁸⁾	공통	5점/건, 10점/학기	150 점	
	5.4	산학협동 및 지도 ¹⁹⁾	공통	5점/건		
	5.5	기술·경영자문 ²⁰⁾	공통	5점/건		
	5.6	창업교육 ²¹⁾	공통	5점/건		
	5.7	산업체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²²⁾	공통	10점/건		
	5.8	국제 표준화 기고문 ²³⁾	공통	5점/건		
	5.9	창업지도 ²⁵⁾	공통	10점/건		150 점
				20점/건		
	5.10	표준현장실습 학기제 기업섭외 및 지도 ²⁶⁾	공통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A:10점/명, B:15점/명, C:20점/명		
	5.11	유료가족회사 유치	공통	연회비 100만원당 10점		
	5.12	산업체 계약학과 유치 ²⁷⁾	공통	100점/년		
5.13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 (ICC) 운영	공통	$[1/n * \text{운영수입}] / 100\text{만원} * 10\text{점}$			
5.14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²⁸⁾	공통	100점/건			
5.15	교원창업에 따른 기여	공통	대학재정기여금/100만원*10점			
5.16	산업체공동연구	4.1 기준 적용		-		

※ 각 주 해설

<학술지 논문>

- 1) 적용구분의 ‘공통’은 전체 학부(과) 공통 적용을 의미하며, 그 외에는 학부(과) 및 계열별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물법’은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운항’은 운항학과, ‘경영’은 경영학과를 의미한다.
- 2) SSCI와 A&HCI는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List와 Art&Humanities Citation Index List에 등

재된 학술지를 의미하며, Journal Citation Report(JCR) 주제분야별 Impact Factor(IF) 상위 1% 이내는 300점, 1%<IF≤5%는 270점, 5%<IF≤10%는 240점, 10%<IF≤20%는 210점, 20%<IF≤50%는 180점, IF>50%는 150점으로 해당 범위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 3) SCIE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List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하며, Journal Citation Report(JCR) 주제분야별 Impact Factor(IF) 상위 1% 이내는 200점, 1%<IF≤5%는 180점, 5%<IF≤10%는 160점, 10%<IF≤20%는 140점, 20%<IF≤50%는 120점, IF>50%는 100점으로 해당 범위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개정 2020.3.9>

※ Impact Factor(IF) 상위학술지 선정은 Thomson Reuter사의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주제분야별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논문 최종 발행년도 직전 년도에 공시된 Impact Factor(IF)를 적용한다. 단, 해당 논문이 2개 이상의 주제분야에 포함될 경우 IF 상위에 속한 주제분야 목록 기준으로 평가한다.

- 4) <삭제 2020.3.9>

- 5)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SCOPUS 논문에 해당하는 학술지
6)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재 학술지
7)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재후보 학술지
8)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전문학술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등록된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워크샵, 기술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논문(초록은 제외) 및 공인된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평가번호 2.1내지 2.6의 항목에 미해당될 경우)

<저 서>

- 9) 전문학술서는 전공에 관한 독창적인 국제/국내 학술저서, 국제/국내 대학교과서, 박사학위 논문
10) 번역서는 전공분야의 전문서적을 50쪽 이상 번역한 도서
11) 편저서는 국제/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서적을 편저서한 도서
12) 일반도서는 전문학술서, 번역서, 국제/내 편저서 외 전공 관련 일반도서 및 국정교과서 1, 2종도서
13) 창작물은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내 저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 소설집, 희곡집, 평론집
※ 저서 9) ~ 13)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가 부여되고, 최초 출판(1st edition)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개정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연구활동>

- 14) 국제/국내 연구비 수탁은 국제/국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으로부터 수탁한 학교에 등록된 연구과제 연구비로, 수탁금액 중 운영비를 포함한 간접비(※ 간접비는 해당기간 내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단, 운영비는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으로 산정)를 <별표 2> 평가번호 4. 1의 공식에 따라 배정하고, 타 대학 교원 등 외부 공동연구원은 n에서 제외함. 단,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수탁한 사업과 교육과정, 학생유치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비연구성 과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1.4.26>
- 15) 학생(대학원/학부)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기간 내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는 지도교수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공동)교수에게 <별표 2> 평가번호 4. 2의 공식에 따라 점수가 배점된다. 단, 학생의 지도교수가 참여(공동)교수가 아닐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학생인건비 풀링제에서 지급되는 학부 학생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외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인 경우는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인정될 수 있다.<개정 2023.5.8.>
- 16) 국제/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은 해외 특허기관 또는 국내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 17) 순수기술이전료는 저작권법과 발명진흥법에 명시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학교지분 기술이전료 중 발

명자 인센티브, 연구소 운영비, 지원기관 반납금, 연구 재투자 등 각종 지출액을 제외한 산학협력단 순수 입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별표 2> 평가번호 5.2의 공식에 따라 점수가 배점된다.

- 18) 현장실습지도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에 대해 인정하며, 정규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학기당 10점, 정규 교과목 외 현장실습지도는 건당 5점을 부여한다.
- 19) 산학협동 및 지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체에 기술·경영 관련 강의를 하거나, 본교 학생들에게 취업 관련 특강을 실시하거나 섭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개정 2023.5.8.>
- 20) 기술·경영자문은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체에 기술·경영 자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 21) 창업교육은 본교 학생들에게 창업 관련 특강을 실시하거나 섭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개정 2023.5.8.>
- 22) 산업체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직접 개발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또는 산학협력제도가 교육과정 또는 대학 정책으로 반영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 23) 국제 표준화 기고문은 국제표준기구에 기고하여 기고문 번호가 할당되고 홈페이지에 해당 기고문이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4)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대응에 참여한 교원에 대하여 배점하며, 사업 및 보고서 성격,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5.8.>
- 25) 창업지도는 본교 학생들의 창업을 지도하여 창업에 성공(사업자등록증 발급)한 경우 10점을 배점하며, 창업한 기업체가 연 매출 1000만원 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20점을 배점한다. (동일기업 1회에 한함)
- 26)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기업섭외 및 지도는 기간에 따라 A-C로 분류하며, A는 4주 이상 8주 이내, B는 8주 이상 12주 이내, C는 12주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5.8.>
- 27)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유치는 책임교수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책임일 경우 1/n로 산정한다.
- 28)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은 대표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1/n로 산정한다.

<별표 3> 저자 또는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비율 <개정 2020.3.9>

구 분	저자 또는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주 저자 ¹⁾ 또는 연구자	100%	80%	60%	50%	40%
공동 저자 ²⁾ 또는 연구자	-	70%	50%	40%	30%

※ 각 주 해설

1) 주저자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저자'가 학술지 논문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나. '주저자'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1저자(1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학술지 논문에 교신저자로 명기된 저자)'를 동일하게 주저자로 인정한다.<개정 2020.3.9.>

2) 공동저자는 주저자 외 저자임

<별표 4> 봉사업적 평가 기준 <개정 2012.10.31., 2012.12.21., 2013.12.23., 2015.2.3., 2018.3.1., 2023.5.8.>

구분	평가번호	항 목	배점	연간 인정상한	
6. 교내봉사	6. 1	행정보직 ¹⁾ (주요 행정처·학장, 학부(과)장, 주임교수, 공학 교육인증 P.D. 이상)	40점	20건	
	6. 2	대학본부 각종 위원회 위원 ²⁾	10점		
	6. 3	각 단과대학별 각종 위원회 위원 ³⁾	10점		
	6. 4	동아리, 학생자치기구 지도교수 ⁴⁾	10점		
		동아리, 학생자치 기구 및 과제 연구실 학생 인솔에 의한 수상 등 ⁴⁻¹⁾	30점		
	6. 5	입시 감독 및 면접, 출제, 채점/입시 홍보 등 ⁵⁾	5점/회	출제 50점	
	6. 6	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학차원의 연구 및 교육사업의 제안 서 작성에 참여(책임교수) ⁶⁾	10점/회 (50점/회)		
	6. 7	대학특성화 사업 등 대학차원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에 대한 운영봉사 ⁷⁾	10점/회		
	6. 8	학교행사 참여 ⁸⁾	5점/회		
	6. 9	<삭제 2023.5.8.>	-		
	6. 10	<삭제 2023.5.8.>	-		
	6. 11	부속기관장 ¹¹⁾	25점		
6. 12	대학발전기금 ¹²⁾	5점/10점/ 20점/30점			
7. 교외봉사	7. 1	국제학회 임원(회장단/임원/편집위원) ¹³⁾	25점/15점/10점	3건	80점
	7. 2	국내학회 임원(회장단/임원/편집위원) ¹⁴⁾	20점/12점/8점	3건	
	7. 3	국내외 학술회의 임원(위원장/조직 및 편집위원) ¹⁵⁾	5점/3점	4건	
	7. 4	국내외 학술회의 참여(주제발표/토론자/좌장) ¹⁶⁾	5점/3점/3점	4건	
	7.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등 ¹⁷⁾	10점	3건	
	7. 6	출제위원 등(국가고시/공무원 임용) ¹⁸⁾	10점/5점	3건	
	7. 7	공익 및 사회단체 자문위원 등 ¹⁹⁾	5점	3건	
	7. 8	전공관련 자문활동 등(전국/지방) ²⁰⁾	5점/3점	-	
8. 기타봉사	8. 1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 봉사 <대학발전 기여> ²¹⁾	50점 (인정상한)		

※ 각 주 해설

- 1) 행정보직은 주요 행정처·학장,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이상의 보직을 6개월 이상 담당했을 경우
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한다. 단, 상기의 행정보직을 겸직하였을 경우 하나의 점수만을 인정한다.
- 2) 대학의 제 규정에 의거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한다.

- 3) 각 단과대학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대학본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한다.
- 4) 동아리, 학생자치기구 지도교수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한다.
- 4-1) 동아리, 학생 자치기구 활동으로 인하여 전국단위의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또는 연구실 학생 지도 활동으로 전국단위 매체에 보도된 경우 배점한다.<신설 2023.5.8.>
- 5) 입시 홍보는 관련부서에서 자료증빙이 되거나, 교원 본인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하며, 대학원 면접은 제외한다. 입시감독, 면접, 홍보 외의 활동 중에서 입학관리팀에서 봉사업적으로서 확인 가능한 실적의 경우 추가 인정할 수 있다.
단, 출제의 경우 날짜별로 횟수를 인정하되 연간 상한 30점까지만 인정한다.
- 6) 대학차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제안서, 보고서 등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교원의 경우 회당 10점을 부여하며, 책임교수의 경우 50점을 부여한다.<개정 2023.5.8.>
- 7)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한 간사, 운영부장 등의 직위 수행에 대해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교수회의, 교수연수, 졸업식, 입학식, 개교기념일 행사, 대학개최 특강 등 대학본부에서 인정하는 행사로서 사전에 미리 공지된 행사에 한한다.
- 9) 공학교육인증 A.D.는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인정하며, 상기 6.1의 행정보직을 겸직하였을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10)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보고서, 대응서 작성 등에 한하며 공학교육인증 P.D. 및 A.D.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11) 학칙 제55조에 명기된 부속기관장, 센터장, 부센터장으로서, 책임시수 감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3.5.8.>
- 12) 대학발전 기금을 현금하거나 유치하였을 때 다음 점수를 인정한다. (10만원 이상~100만원미만 : 5점, 100만원 이상~1천만원미만 : 10점,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20점, 5천만원이상 : 30점)
- 13) 전공과 관련된 국제학회의 회장단, 임원 및 편집위원
- 14) 전공과 관련된 공인 국내학회의 회장단, 임원 및 편집위원
- 15)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공 관련 학술회의의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편집위원 등
- 16)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공 관련 학술회의의 주제발표, 좌장, 토론자 등으로 참여. 단, 논문발표와 일반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 17)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각종 위원으로 활동
- 18)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시험에 해당하는 국가고시의 출제위원. 또는 그 이외의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험 출제 위원
- 19) 공익법인 또는 사회봉사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의 자문 또는 위원으로 활동
- 20)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문활동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경우
- 21) 교내외 봉사 외 학교 발전, 홍보 및 명예를 위해 크게 기여한 활동내역을 총장이 종합적으로 평가

<별표 5> <삭제 2015.2.3.>

<별표 6> 최초 계약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기준 <개정 2012.10.31., 2015.2.3., 2017.3.1., 2018.3.1., 2021.4.26>

영역	적용구분	기준점수	
		(계약기간 : 2년)	
		조교수	부교수
교육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520점	
<교육의무>		<160점>	
봉사		80점	
연구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310점	320점
	항공·경영대학	250점	260점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50점	160점

<별표 7> 승진 기준 <개정 2012.10.31., 2015.2.3., 2017.3.1., 2017.11.2., 2018.3.1., 2021.4.26., 2022.5.2., 2023. 5. 8.>

적용구분	영역	기준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최소승진소요년수					
		6년		4년		5년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교육		260점/년 <1,560점>	260점/년 <1,040점>	260점/년 <1,300점>		
		의무	480점	320점	400점		
	봉사	80점/년 <480점>	80점/년 <320점>	100점/년 <500점>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연구		155점/년 <930점>	155점/년 <620점>	320점/년 <1,600점>		
		의무점수A	300점(주저자 3편)	200점(주저자 2편)	700점(주저자 6편)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75점(주저자 1편)	50점(주저자 1편)	-		
		간접비 대체상한 ²⁾	-	-	300점(주저자 3편)		
		의무점수B	675점	450점	1,000점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225점	150점	250점		
항공·경영대학 (항공교물학부, 경영학부)	연구		125점/년 <750점>	125점/년 <500점>	200점/년 <1,000점>		
		의무점수A	200점(주저자 3편)	135점(주저자 2편)	300점(주저자 4편)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50점(주저자 1편)	35점	-		
		간접비 대체상한 ²⁾	-	-	100점(주저자 1편)		
		의무점수B	450점	300점	600점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150점	100점	15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³⁾	110점 (주저자 1편)	75점 (주저자 1편)	150점 (주저자 2편)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연구		85점/년 <510점>	85점/년 <340점>	135점/년 <675점>		
		의무점수A	140점(주저자 3편)	95점(주저자 2편)	225점(주저자 4편)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35점(주저자 1편)	25점	-		
		간접비 대체상한 ²⁾	-	-	100점 (주저자 1편)		
		의무점수B	260점	175점	450점		
		산학협력 대체상한 ¹⁾	85점	60점	12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³⁾	65점	(주저자 1편) 45점	(주저자 1편) 75점	(주저자 2편) 75점	
		교육점수 대체상한 ⁴⁾	65점	45점	45점	75점	

- ※ 점/년은 연간 점수, < >의 점수는 최소승진소요년수 전체 기간 동안의 총 합산점수이며, 의무점수A 및 의무점수B에 대한 인정 요건은 본 시행세칙 <별표10>의 기준에 따른다.
 - ※ 의무점수A 괄호 안에 표기된 주저자 편수는 의무점수A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저자 의무편수이며, 복수 제1저자 혹은 복수 교신저자 논문의 경우 산식(1/(제1저자수+교수저자수-1))을 적용하여 편수를 산정함.<개정 2021.4.26.>
단, 주저자 논문만으로 의무점수A를 충족한 경우, 제출된 논문 편수가 주저자 의무편수보다 적더라도 주저자 의무는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교원이 재임용 기간 내에 승진을 재상신할 경우, 최소승진소요년수 동안 충족해야 할 부족점수를 충족하고, 승진하지 못한 해당기간만큼의 영역별 연간 점수를 추가하여 충족해야 한다. 단, 의무점수 및 주저자 의무편수는 추가되지 않는다.
 - ※ 최소승진소요년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다.
- 주1) 산학협력 대체상한은 산학협력영역(5.3~5.15)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의무점수 및 의무논문 편수를 의미함.
주2) 간접비 대체상한은 국내·국제 연구비수탁[책임](4.1)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의무점수 및 의무논문 편수를 의미함.
주3) 봉사점수 대체상한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점수, 의무점수A, 의무점수B 각각의 점수를 의미하며,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
주4) 교육점수 대체상한은 <별표1> 교육업적 평가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점수, 의무점수A, 의무점수B 각각의 점수를 의미하며, <별표1>로 산출되는 교육영역 연간 총점에서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

<별표 8> 조기승진 기준 <개정 2012.10.31., 2012.12.21., 2015.2.3., 2017.3.1., 2018.3.1., 2021.4.26., 2023.5.8.>

적용구분	영역	기준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정교수	
		조기승진임용 평가 년 수		
		3년	4년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교육	의무	960점	1,220점
			240점	320점
	봉사	240점	400점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연구		1,860점	4,800점
		의무점수A	350점(주저자 2편)	1,400점(주저자 8편)
		의무점수B	750점	2,000점
항공·경영대학	연구		1,500점	3,000점
		의무점수A	200점(주저자 2편)	300점(주저자 3편)
		의무점수B	500점	1200점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연구		900점	1,800점
		의무점수A	150점(주저자 2편)	400점(주저자 3편)
		의무점수B	300점	800점

- ※ 최소승진소요년수 전체 기간 동안의 영역별 최소점수이며, 의무점수A 및 의무점수B의 인정 요건은 본 시행세칙 <별표10>의 기준에 따른다.
- ※ 의무점수A는 ‘주저자 의무편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주저자 의무편수에 Impact Factor 상위 5%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주저자 논문을 부교수 승진 시 1편 이상, 교수 승진 시 2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Impact Factor 인정 요건은 본 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다
- ※ Impact Factor 상위 5% 이상 학술지 게재 의무를 만족하고, 주저자 논문만으로 의무점수A를 충족한 경우, 제출된 논문 편수가 주저자 의무편수보다 적더라도 주저자 의무는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조기승진임용 평가 년 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7조 및 본 시행세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별표 9> 승호봉 기준 <개정 2015.2.3.,2017.3.1., 2017.11.2., 2018.3.1., 2021.4.26., 2023.5.8.>

적용구분	대상기간	기준점수			교육 및 연구 최소점수
		봉사	교육 <교육의무>	연구 <연구의무>	
공과대학, AI융합대학	2년	200점	460점 <160점>	350점 <SCIE* 75점 또는 SCOPUS 150점>	95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항공·경영대학 (항공교물학부, 경영학부)		240점	460점 <160점>	250점 <SCOPUS 40점 또는 국내등재(후보)지 80점>	84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SCOPUS 20점 국내등재 (후보)지 40점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250점	460점 <160점>	125점 <SCOPUS 25점 또는 국내등재(후보)지 50점>	685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SCOPUS 12.5점 국내등재 (후보)지 25점				

※ 승호봉 대상기간에 대한 영역별 기준점수이며, 교육 및 연구영역의 합이 최소점수를 만족해야 한다.

※ < >의 점수는 교육영역 및 연구영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의무점수를 의미하며, 교육의무는 교육영역 “1.7 학사관리”에서 취득해야 하는 점수로 연간 80점임. <개정 2023.5.8.>

*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전산학) 관련 분야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SCIE로 인정하는 우수학술대회 논문 실적을 SCIE로 적용하며, 점수기준은 <별표2> 2.3. SCIE의 최소점수로 적용함.

<삭제 2023.5.8.>

주1) 봉사점수 대체상한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의무 점수를 의미하며,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기준점수(공과대학, AI융합대학 140점, 항공교통물류학부, 경영학부 160점,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70점)를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가능함. <신설 2023.5.8.>

<별표9-1> 승급 기준 [2017.3.1. 이후 신규교원 대상] <신설 2017.3.1., 2017.11.2., 2018.3.1., 2021.4.26., 2023.5.8.>

적용구분	기준점수				
	봉사	교육 <교육의무>	연구		교육 및 연구 최소점수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700점	1,610점 <560점>	1225점 <SCIE* 262.5점>		3325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SCIE 131.3점	
항공경영대학 (항공교물학부, 경영학부)	840점	1,610점 <560점>	875점 <SCOPUS 이상 140점> <국내등재(후보)지 280점>		294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SCOPUS 이상 70점 국내등재(후보)지 140점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875점	1,610점 <560점>	437.5점 <SCOPUS 이상 87.5점> <국내등재(후보)지 175점>**		2397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SCOPUS 이상 44점 국내등재(후보)지 87.5점	

※ < >의 점수는 연구영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논문 의무점수를 의미한다.

*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전산학) 관련 분야는 BK21플러스 사업에서 SCIE로 인정하는 우수학술대회 논문 실적을 SCIE로 적용하며, 점수기준은 <별표2> 2.3.SCIE의 최소점수로 적용함

** <삭제 2023.5.8.>

주1) 봉사점수 대체상한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의무 점수를 의미하며,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기준점수(공과대학, 시용합대학 140점, 항공교통물류학부, 경영학부 160점,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70점)를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 <신설 2023.5.8.>

<별표 9-2> 승급 기준 [2017.2.28. 현재 재직교원 대상] <신설 2017.3.1., 2017.11.2., 2018.3.1., 2021.4.26., 2023.5.8.>

적용구분	기준점수 (기준기간:1년)			교육 및 연구 최소점수
	봉사	교육 <교육의무>	연구	
공과대학, 시용합대학	100점	230점 <80점>	175점 <SCIE* 37.5점 또는 SCOPUS 75점>	475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항공경영대학 (항공교물학부, 경영학부)	120점	230점 <80점>	125점 <SCOPUS 이상 20점 또는 국내등재(후보)지 40점>	420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25점	230점 <80점>	62.5점 <SCOPUS 이상 12.5점 또는 국내등재(후보)지 25점>	342.5점
			봉사점수 대체상한 ¹⁾	

-
- ※ < >의 점수는 연구영역에서 충족해야 하는 논문 의무점수를 의미한다. <삭제 2023.5.8.>
- *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전산학) 관련 분야는 BK21플러스 사업에서 SCIE로 인정하는 우수학술대회 논문 실적을 SCIE로 적용하며, 점수기준은 <별표2> 2.3.SCIE의 최소점수로 적용함
- ※※ 2017.2.28. 재직교원의 경우 기존 호봉체계를 신 직급체계에 연계하며, 2017.3.1. 현재 본인의호봉에 따라 승급 및 승호봉 소요년수 및 기준이 결정됨. 2017.2.28. 현재 재직중인 교원관련 연봉제 직급체계 및 승급관련 세부내용은 “한국항공대학교 연봉제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함
- 주1) 봉사점수 대체상한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의무 점수를 의미하며,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기준점수(공과대학, SI융합대학 140점, 항공교통물류학부, 경영학부 160점, 항공운항학과,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170점)를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 <신설 2023.5.8.>

<별표 10> 연구영역 의무점수 인정 기준 <신설 2015.2.3.> <개정 2017.11.2., 2021.4.26., 2022.5.2., 2023.5.8.>

적용 구분		인정기준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의무점수A	SCIE 이상 학술지 ※ 단, Computer Science 관련 분야는 BK21플러스 사업에서 SCIE급으로 인정하는 우수학술대회 논문 실적을 적용 ³⁾ 하되, 주저편수 및 점수의 50%를 상한으로 함 ※※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실적은 “5.산학협력영역(5.3~5.15)”에서 취득한 점수를 의미함. 대체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50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 ※※※ 부교수→교수 승진시 간접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접비 실적은 <별표2> 연구업적평가 기준 4.1“국내·국제 연구비수탁”의 간접비를 의미하며, 표 하단 산식 ⁵⁾ 에 따라 배정한다.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100점 달성 시 대체가능함.
	의무점수B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간접비 ¹⁾ , 순수기술이전료, 산학협력실적, 대학차원의 사업제안서, 보고서 제출 실적 ※ 단, SCOPUS(국제)는 상한 60점, SCOPUS(국내)/국내등재(후보)지는 상한 50점 ²⁾ , 산학협력실적은 “5.산학협력영역(5.3~5.15)”에서 취득한 점수를 의미하며, 대체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항공·경영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의무점수A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SCIE급 주저자 2편(부교수→교수)/1편(조교수→부교수) 이상 필수] ※ 단, 법학 전공 및 관제실기 전공 관련 교원은 SCIE 주저자 의무제외 ※※ 조교수 → 부교수 승진시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실적은 “5.산학협력영역(5.3~5.15)”에서 취득한 점수를 의미함. 대체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50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 ※※※ 부교수→교수 승진시 간접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접비 실적은 <별표2> 연구업적평가 기준 4.1“국내·국제 연구비수탁”의 간접비를 의미하며, 표 하단 산식 ⁵⁾ 에 따라 배정한다.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100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 ※※※※ 승진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 단, SCIE급 주저자는 정교수 승진에 한하여 해당 점수 150점 달성 시 1편 대체 가능함.
	의무점수B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간접비 ¹⁾ , 순수기술이전료, 산학협력실적, 대학차원의 사업제안서, 보고서 제출 실적 ※ <삭제 2023.5.8.> ※※ 산학협력실적은 “5.산학협력영역(5.3~5.15)”에서 취득한 점수를 의미하며, 대체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 승진 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

적용 구분		인정기준
항공·경영대학 (항공운항학과, 경영학부)	의무점수A	<p>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SCIE급 주저자 1편 이상 필수]</p> <p>※ 단, 조종실기 전공 교원은 SCIE 주저자 의무 제외</p> <p>※※ 부교수→교수 승진시 간접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접비 실적은 <별표2> 연구업적평가 기준 4.1“국내·국제 연구비수탁”의 간접비를 의미하며, 표 하단 산식⁵⁾에 따라 배정한다.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100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SCIE 주저자 대체는 불가함)</p> <p>※※※ 승진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교육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가능함.(SCIE 주저자 대체는 불가함)</p> <p>※※※※ 승진시 교육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적은 <별표1> 교육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1>로 산출되는 교육영역 연간 총점에서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봉사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대체 가능함.(SCIE 주저자 대체는 불가함)</p>
	의무점수B	<p>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간접비¹⁾, 순수기술이전료, 전문학술서, 대학차원의 사업제안서, 보고서 제출 실적</p> <p>※ 단, 전문학술서는 상한 60점²⁾</p> <p>※※ 승진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p> <p>※※※ 승진시 교육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적은 <별표1> 교육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1>로 산출되는 교육영역 연간 총점에서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함.</p>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의무점수A	<p>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p> <p>※ 부교수→교수 승진시 간접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접비실적은 <별표2> 연구업적평가 기준 4.1“국내·국제 연구비수탁”의 간접비를 의미하며, 표 하단 산식⁵⁾에 따라 배정한다.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르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100점 달성 시 대체 가능함.</p> <p>※※ 승진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교육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가능함.</p> <p>※※※ 승진시 교육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적은 <별표1> 교육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1>로 산출되는 교육영역 연간 총점에서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봉사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대체 가능함.</p>

적용 구분		인정기준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의무점수B	국내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간접비 ¹⁾ , 순수기술이전료, 전문학술서, 대학차원의 사업제안서, 보고서 제출 실적 ※ 승진 시 봉사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봉사실적은 <별표4> 봉사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4>로 산출되는 봉사영역 연간 총점에서 17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교육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가능함. ※※ 승진시 교육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실적은 <별표1> 교육업적 평가 기준 점수를 의미하고, 상한 점수는 <별표7>에 따름. <별표1>로 산출되는 교육영역 연간 총점에서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대하여 대체 가능하며, 주저자 1편은 해당 점수 75점 달성 시(봉사점수 대체상한 점수와 합산 가능) 대체 가능함.

※ 각 주 해설

- 의무점수B는 의무점수A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1) 간접비는 <별표2> 연구업적 평가기준 4.1의 ‘국제·국내 연구비 수탁’점수를 의미함. <개정 2021.4.26., 2023.5.8.>
- 2) 표기된 상한 점수는 승진 및 조기승진 평가기간 전체에 대한 상한을 의미한다.
- 3) 점수 배점 기준은 <별표2>의 2.3 SCIE의 최소점수를 적용하며, 주저편수에 관한 기준은 <별표3>을 적용한다.
- 4) 2017.2.28.이전의 교육업적 실적은 연간 총점 200점 이상으로 적용함
- 5) 부교수→교수 승진 시 의무 A점수를 간접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접비 실적 점수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단, 항공·경영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소속 법학, 관제실기 전공 관련 교원은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3.5.8.>

항목	적용 구분	배 점
간접비 [책임]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항공물), 인문자연학부(자연계열)	$[(1+2/n+1) \cdot (\text{간접비}/2)] \div 100\text{만원} \times 2\text{점}$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2/n+1) \cdot (\text{간접비}/2)] \div 100\text{만원} \times 20\text{점}$
간접비 [공동]	항공·경영대학(경영),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n+1) \cdot (\text{간접비}/2)] \div 100\text{만원} \times 2\text{점}$
	항공·경영대학(경영, 운항), 인문자연학부(인문사회), 영아학과, 자유전공학부	$[(1/n+1) \cdot (\text{간접비}/2)] \div 100\text{만원} \times 20\text{점}$

<별표 11> 책임시간 3시간인 보직교원의 승급심사 적용 <신설 2017.3.1., 개정 2018.3.1.>

구분	적용사항	
보직 수행 기간 중	보직수행 기간 1개학기 이하	승호봉 기준 점수 및 의무논문 경감 없음
	보직수행기간 2개학기 이하	1년분의 승호봉 기준을 경감하며, 의무논문을 면제함
	보직수행 기간 3개학기 이상	자동 승호봉
보직 만료 후	첫 승호봉 시	첫 승호봉까지 3개학기 이상 남은 경우 1년분의 승호봉 기준을 경감하며, 의무논문을 면제함
		2개 학기 이하 남은 경우 자동 승호봉
	2회차 승호봉 이후	보직을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보직 수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승호봉기간이 재차(2회~3회) 도래한 경우 의무논문 면제 (2회에 한함)

※ 보직 발령일이 포함된 학기는 1개 학기로 간주한다.